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82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07. 4.

발 의 자 : 성용기 · 이은석 의원
외 8인

□ 개정이유

- 상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건축 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연면적 합계의 7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에서의 체계적인 대규모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바
-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비율을 적정 비율로 조정하여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건축을 가능하게 하고 이에 따른 주택공급의 확대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함
 - 중심상업지역, 일반상업지역,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함.

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2항제2호·제38조제1항·제39조제1항 중 “70퍼센트”를 각각 “80퍼센트”로 한다.

별표 2중 “70퍼센트”를 “80퍼센트”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| | |
|--------------|--|
| 관계법령 | |
| 관련법규 정비대상 | |
| 관련자료 | |